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95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운영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제5호, 제6호).
- 저장강박 의심가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신설(안 제6조제4호, 제5호).
-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생활실태 조사 실시 신설(안 제6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8. 23. ~ 8. 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li> <li>2.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3.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등록 장애인</li> <li>4. “<u>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통합사례 관리 대상 가구</li> </o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5. (생략)</p> <p>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ol>	<p>제5조(지원대상)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li> <li>2. 「<u>한부모가족지원법</u>」----- -----</li> <li>3. 「<u>장애인복지법</u>」----- -----</li> <li>4. 「<u>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통합사례 관리 대상 가구</li> <li>5. 「<u>기초연금법</u>」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li> <li>6. 「<u>긴급복지지원법</u>」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li> <li>7. (현행 제5호와 같음)</li> </ol> <p>제6조(지원내용)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ol>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  
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  
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  
다.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시행 2021. 9. 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04호, 2021. 9. 2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복지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204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